

직 권 조 치 결 과 공 고 문

「주민등록법」 제20조제7항 및 제20조의2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
공고합니다.

2023년 06월 12일

약수동장 인

세대주성명	성명 생년월일	주소	직권조치사항 직권조치일자
류 *학	류 *학 1971-07-19	서울특별시 중구 다산로8길 (신당동)	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2023-05-30
윤 *인	윤 *인 1996-09-01	서울특별시 중구 다산로 (신당동)	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2023-05-30